

요 약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암보험 상품에서 담보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음. 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의하면, 단순히 암 치료가 종료된 후에 그로 인한 후유증·합병증을 치료하거나 건강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암 치료 목적 입원으로 보기 어려움. 반면, 암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력 강화, 후유증 치료 등을 하는 것이 향후의 암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인정됨.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향후의 암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간단하거나 명확한 사항은 아니어서, 결국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암입원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서 환자의 상태, 입원 치료의 필요성, 치료의 내용 및 방법, 의사의 소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최근 몇 년간 암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암입원비를 담보하는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 의하면, 암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입원이라고 하여 전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여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함¹⁾
- 환자가 암 치료 도중 또는 암 치료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것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음
 -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암입원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것임
- 이러한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보험회사를 규탄하는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암입원비와 관련하여 2,125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²⁾
 - 2020년 9월에는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하여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

1) 약관에 따라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를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를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한편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위 개선 방안이 반영된 암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개선 이후의 약관에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정의하였으며, 또한 요양병원 암입원비가 별도의 담보로 분리되었음(즉, 암입원비 급부에서 요양병원 암입원비 급부를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입원비의 경우에는 암의 직접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함)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4. 30), “2018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회사가 승소하였음³⁾

- 한편 2020년 12월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하였고,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은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음⁵⁾

○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에서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법원은 ①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나아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경우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②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⁶⁾
 - 암입원비의 지급 사유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인수한 위험을 과도하게 확장하게 되어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이 균형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약관규제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그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봄⁷⁾
 - 입원과 관련해서도,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러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한 경우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⁸⁾
 - 한편 ①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항암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종전의 항암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치료 등을 받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⁹⁾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서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는 것은 암의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암의 치료에 필요한 입원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함
 - 요양치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① 단순히 암의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3)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34330 판결. 보험회사의 암입원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나51118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해당 결론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함. 한편 해당 확정 판결에 대해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심 절차 진행 중임

4) 핵심 사건은 ①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과 ②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조항 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위반 사항 때문에 제재 수위가 기관 경고로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움

5) 아시아경제(2021. 1. 13), “삼성생명-보암모, 끝 안보이는 암보험 錢爭”

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등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나51118 판결

8) 위 2019나51118 판결

9) 항암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여 면역력 저하, 전신 쇠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 그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된 후에야 다시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대법원 2016. 9. 9. 선고 2016다230164, 2016다230171 판결)

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입원하는 요양치료의 경우에는 암의 치료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만약 ② 동일한 내용의 항암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종전에 받았던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경우¹⁰⁾에는 암 치료 목적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6차에 걸쳐 항암약물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중간에 부작용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사안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입원은 그 후의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¹¹⁾
- 한편, 피보험자가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진단으로 절제술을 받고 총 12회의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항암치료 종결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은 사안(그 이후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이는 후유증만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므로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¹²⁾

〈그림 1〉 면역력 치료의 암 직접 치료 목적 해당 여부

치료	암의 직접 치료 목적 해당 여부
직접 치료 면역력 치료 직접 치료	• 암의 직접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후유증 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 목적에 해당
직접 치료 면역력 치료	• 단순히 암의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결국,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암입원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개별 사안에서 해당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 단순히 암 치료가 종료된 후에 그로 인한 후유증, 합병증을 치료하거나 건강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 암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력 강화, 후유증 치료 등을 하는 것이 향후의 암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입원도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에 해당할 것임

10) 이와 관련하여,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의 치료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그 자체가 항암치료에 해당하거나 항암 효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후유증의 치료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가 반드시 수술·방사선·항암약물치료 등과 동일한 병원 내에서 같은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

1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제2018-14호. 피보험자가 항암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점, 요양병원 입원 기간 동안 잦은 설사와 오심 및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발열과 설사 등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수차례 내원한 것 외에는 특별한 외출 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1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제2018-15호

- 다만 이 경우에도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앞으로 지속될 암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간단하거나 명확한 사항은 아님
- 결국 개별 사안에서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및 방법, 의사의 소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